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주 찬 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1 선거구 이 창 섭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로 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의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금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